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오보’ KBS에 3,500만 원 배상 판결 ‘골프장 납치’ 관련 영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보도

애꿎은 시민을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해 사진과 함께 실명으로 보도한 KBS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3,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골프장 납치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납치 용의자로 이름과 얼굴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며 한모(51) 씨가 KBS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에게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9일 판결했다.

KBS는 지난해 3월 1일 ‘뉴스타임’의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이란 기사에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는 폭행 치사 혐의로 지명수배된 50살 한OO 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 씨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 씨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는 범인들이 한 씨의 명의를 도용해 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과 얼굴이 잘못 공개될 경우 개인의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가 ‘경찰의 공식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더욱 면밀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은 지난해 2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H골프장 사장 강모 씨와 일행 2명이 괴한들에게 차량으로 납치됐다 풀려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골프장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강 씨의 외삼촌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모의해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2008년 4월 9일

### 수의과학검역원, 서울신문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양계협회도 “조류독감 과장 보도했다”…1인 시위 예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 서울신문 5월 21일자 1면과 8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취지의 조정신청을 냈다. 이병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관은 2일 “검역원의 발표를 왜곡해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비쳐져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 기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수의학과 교수들의 말을 인용해 “올해 전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는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며 지난 16일 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가 유전자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고만 밝혀 조류독감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이 기사에 대해 대한양계협회(이하 양계협회)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이준동 양계협회장과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용진 오리협회 전무, 최정배 계육협회 전무는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서울신문을 찾아가 “조류독감의 위험을 과장 보도했다”며 강석진 편집국장을 만나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영훈 양계협회 자조금사업팀장은 “서울신문이 조류독감 내용을 계속 기사화하는 데 과잉보도 한 측면이 있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발표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인체 감염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닭·오리 생산 농가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서울신문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도 밝혔다. 기 팀장은 “5월 21일 1인 시위를 벌일 목적으로 서울 남부경찰서에 한 달 기간(5월 21일 ~ 6월 21일) 집회신고를 냈다”며 “이미 다른 집회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잡혀 있어, 실질적으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1인 시위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진 편집국장은 “양계농가들이 기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정부가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를 작성한 김승훈 기자도 “팩트만 추린 것이고 주관적인 부분은 기사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8년 6월 2일

## 법원, KBS '황토팩 방송' 정정보도 판결

지난해 10월 5일 방송된 KBS 1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탤런트 김영애 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주)참토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는 "KBS는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고 13일 판결했다.

참토원 측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판결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보도 자료 전문.

첫째, 방송내용의 첫가루 방송은 명백한 허위보도로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첫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입이 밝혀졌다.

둘째, 참토원 방영금지가처분 일부 승소결정은 사실이다. 참토원이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보도

는 명백히 허위보도이므로 이에 정정보도하다.

셋째, 일반화장품 허용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방송 부분이다. 일반화장품 기준과 원료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참토원 제품은 사용시 물이나 화장수와 섞어 쓰면 중금속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게 되므로 반론보도를 하라.

넷째, 간접강제 사항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한 점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결정을 거부한 점 또한 본 사건에서 보여준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 측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간종료일로부터 매주 1회 지연 시마다 3,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편 김영애 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선 불공정한 방송으로 인해 그간 황토솔뭍 제품 사용하신 고객님들의 혼란을 해소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산지경으로 내몰렸지만 그나마 왜곡되어졌던 내용들이 하나 둘 공정하게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불공정한 방송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입고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길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토원 관계자는 "향후 빠른 시일 내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작진에 형사 고소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방송내용의 부당성을 바로잡아달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반론보도직권결정을 내렸다.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했으며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사건을 법원의 본안 소송으로 이관했고, 지난 8일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머니투데이 2008년 5월 14일

## 이렇다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걸어라

"본문과 전혀 다를 정도로 과장 및 윤색된 제목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5일 발간한 '2007 조정·중재사건 분석보고서'에 담긴 사례다.

보고서는 지난해 접수된 조정 1,043건과 중재 12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쟁점별 내용도 함께 분석했다.

보고서의 주요 사례에 따르면, 기사 본문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본문의 내용과 달리 과장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독자가 허위사실을 인식

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A모 의원'으로만 표기했다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해당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

또 방송사의 나레이터가 한 말이 아니라 타인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을 뿐이라 해도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제보사건을 제보자 일방의 진술만을 토대로 보도했

다면,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초상권 사용에 동의했다라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초상권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언론사가 경찰에게서 입수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신체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해도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뉴스스 2008년 3월 27일

## 금창태 씨, 명예훼손 소송 패소

금창태 전 시사저널 사장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기사 삭제 파문'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와 언론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4일 금 사장이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기사 삭제 행위를 접하고 시사저널의 기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한 후 이와 같은 언론사의 편집인 또는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는 시정되어야 함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이는 점, 모욕적인 표현들이 칼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 전 사장은 2006년 6월 시사저널에서 삼성그룹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 한겨레21 등이 비판적 논조로 칼럼을 쓰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협회보 2008년 5월 21일

## “중앙일보 여론조사 허위 보도한 오마이뉴스 1억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61단독 김진오 판사는 28일 중앙일보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월 “〈중앙〉서 ‘문국현 3위’ 기사 빠진 까닭은?”이라는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문국현 후보가 3.3%의 지지를 얻어 3.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3위 다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오후 10시에 지방에 배달되는 42판에는 게재했다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배달되는 43판에는 다른 기사로 대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를 지면이나 온라인상에 게재한 적이 아예 없었다.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중앙일보는 오마이뉴스 측에 전화를 걸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정정할 수 없다’

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정정요청이 거둬지고 법적 대응 방침을 알리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취재원이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측이 이번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08년 2월 29일

## 인기협, ‘포털뉴스 피해구제’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인터넷기업협회는 19일 포털 뉴스서비스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기협은 “작년 10월 국회는 뉴스 게시 중지 등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이 법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17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차기 국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위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뉴스를 제작하는 주체(신문 및 방송사)와 뉴스를 유통하는 매개자(포털)는 각기 성격에 맞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입법 환경에서는 뉴스와 관련된 피해구제와 기사 삭제를 언론중재위원회가 맡고 있는 만큼, 포털뉴스 문제 해결은 언론사나 포털사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로 ▲ 피해자가 기사를 내리도록 요청할 경우 포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게시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식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뉴스 기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 기사 삭제 혹은 정정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언론사와 포털에 통보한다 ▲ 언론사는 포털에게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정정된 기사는 재송고해야 한다는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2008년 3월 19일

## 김 전 대통령, 로비공작설 보도한 '일요서울'에 소송제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로비 공작설을 보도한 주간지 '일요서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20일 "일요서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 국정원 직원 김 씨의 말을 빌어 김 전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대북송금, 노벨평화상 로비 공작 등 허무맹랑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기자로서

의 직업의식을 망각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기사를 작성하고 출판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사과문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도 법원에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자신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김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같은 언론사인 '일요서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요서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대북송금, 노벨평화상 로비 공작 등을 주장한 김기삼 씨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스 2008년 5월 21일

## 서울시 초상권 패소로 공모전 사진작가 상금 수십 배 배상금 낼 판

서울시가 초상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공모전 입상사진의 작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금 20여만 원에 사진 소유권과 저작권을 쟁긴 서울시가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하자 작가에게 배상금을 물어내게 하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돈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 씨가 '청계천에 게시된 사진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2003년 '청계천, 그 삶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씨는 그 사진 속에서 노점상으로 등장했다. 특히 이 사진은 청계천 오간수교와 고산자교 사이 벽에 벽화로 제작돼 청계천 일대의 옛 모습을 담은 여러 사진들과 함께 전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허락없이 공공장소에 이씨가 찍힌 사진을 전시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70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시는 구상권 청

구를 포함한 대처 방안을 놓고 고문번호 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전 입상작으로 선정되면서 상금 20여만 원에 사진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모두 시에 내준 사진작가 장모 씨가 상금의 30여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공모전 공고를 내면서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판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일반적인 행정절차이며, 고문번호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2008년 5월 29일

## KBS, 동아에 패소 손배·정정보도 기각

KBS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지난 19일 KBS가 동아일보 지난해 9월 10일자 <KBS 이사회, 반대의견 묵살 - 의견 강행> 제목의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동아일보와 당

당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는 KBS 이사회 의사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9월 동아일보가 해당

기사에서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했다'고 보도하자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었다.

미디어오늘 2008년 3월 26일